#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21

발의연월일: 2025. 5. 28.

발 의 자:이개호·민형배·조인철

박희승 • 이정문 • 황명선

박수현 · 서삼석 · 이건태

위성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.

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.

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##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6항 중 "설계수명 기간 동안"을 "설계수명의 남은 기간 동안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정 안 행 개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(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제36조(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·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. 운영 등) ① ~ ⑤ (생 략) 운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 ⑥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 (<del>6</del>) -----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 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 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 ----설계수명의 남은 기간 동 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⑦ ~ ⑨ (생 략) ⑦ ~ ⑨ (현행과 같음)